

##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제정이유

-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채무상환 부담완화 및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. (안 제2조제1항)
- 나.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. (안 제2조제2항)
- 다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. (안 제3조제1항)
- 라. 지방채무상환기금 계좌 별도 설치관리 및 시금고 예치·관리. (안 제4조)
- 마.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심의위원회 설치 (안 제5조)
- 바.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. (안 제6조제1항)

사.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.  
(안 제6조제2항)

아.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(기금운용관 : 기획실장, 기금출납원 : 예산담당)  
(안 제7조)

## □ 검토의견

- 지방채 총 규모로는 96,51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1,880백만원이며, 기타특별회계는 4,274백만원, 공기업특별회계로는 30,358백만원이며,
-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한바,
-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재원으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 활용토록 하는바, 법령 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제 방 제 정 법

**제 110조 (기금의 운용등)**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방 제 정 법 시 행 령

**제 156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, 그 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제 방 차 치 법

**제 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**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을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